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 정 2023. 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평방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운용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구분) 기부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부금품
2. 비지정기부금품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업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 기부자라 함은 위원회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4. “비지정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5. “현물기부”라 함은 기부자가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기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부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부신청) ① 위원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품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부금 출연 의뢰를 받는 경우 출연자, 출연목적, 출연금액(물품의 종류 및 감정평가액), 사용용도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부금품 영수증의 발급 및 장부비치) ①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접수자는 기부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기부금품 영수증은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의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급하여 위원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부금 단체 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발급일자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5호의3 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29호의7 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별지 제3호 서식」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부금품의 기부대상과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물품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부금 채납결정 및 통지) ① 위원장은 기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의 사전협의를 필요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기부금 채납여부 결정 시 기부금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기부금 채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수납 즉시 기부자에게 알리고 적립금에 포함시켜 운용하되, 사업비로 지출할 경우 지출 1개월 전에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기부금 채납 제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채납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2. 위원회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또는 자금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4. 기부금 수혜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부금
5. 기부금의 합법적·효율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성격의 기부금
6. 기부자와 기부대상 사업의 주체 및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의 기부금

제9조(기부금의 처리) ① 현금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위원회가 관리하는 기부금 수입으로 수납한다. 다만, 조건을 수반하는 기부금의 경우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물품(미술품 등 가치 있는 물품을 말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후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 물품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관리한다.
2.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과세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기부 의사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한다.
3. 동산 및 지식재산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동산 및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해당 동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환가가액을 산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4.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유가증권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환가가액을 산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기부금의 사용) ① 기부금은 기부자가 약정에서 정한 바(사용용도 및 원금보전 여부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정한 용도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위원회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된 사업에 수반되는 직·간접경비
2. 사업에 수반되는 직·간접경비
3. 기타 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업무 담당자는 위원장의 승인에 의하여 위원회 목적사업 추진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해 기부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 명의의 기부증서 및 위원회 내 기부자 명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및 보고) ① 기부업무 담당자는 기부금의 접수·납부 및 사용실적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부업무 담당자는 기부금 대장·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그 밖에 기부금의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위원회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부업무 담당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회계처리) 기부금품은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며, 위원회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3. 4. 28.>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부금품 신청서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소재지) :
- 기부내용

순번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기부조건(지정기부일 경우에만 기재함)

위와 같이 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련번호

기부금 영수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④ 기부내용

유형	코드	구분	연월일	내용			금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기부금 수령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 ④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체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유형 (해당란에 √) <input type="checkbox"/> 정부등 공공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종교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자선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문화 <input type="checkbox"/> 학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⑫ 기부자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⑧ ~ ⑪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